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1. 6. 14.(월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
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 현황

가. 지출내역

(단위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
합	계			72,061,000	71,991,670	69,330	
도로과	도로개설 및 확장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배상금등	56,705,000	56,636,440	68,560	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일부 패소 및 2심 항소 기각, 상고포기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
				15,356,000	15,355,230	770	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대한전선(주)에서 토지사용 청구 요청에 대한 미지급 부당이득금 변제

나. 검토의견

-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 2건에 총 7,199만 1천원을
지출하였음.
따라서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
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